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
----------	------

제출년월일 : 2020. 0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포구립 체육시설 당구장 추가 및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이 가능한 개인 사용료 범위, 부문별(장애인, 어르신, 여성, 청소년) 당구대회 개최 장소 활용을 위한 사용료 범위를 정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마포구립 체육시설 당구장 추가(안 제3조 및 별표 1)
- 나. 개인사용료 범위에 당구장 추가(안 제8조 및 별표 2)
- 다. 전용사용료 범위에 당구장 추가(안 제8조 및 별표 3)
- 라. 성산 당구장은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12. 19. ~ 2020. 1. 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사 결과 : 원안 동의
- 6)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동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2(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 (창전동)
망원동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 (망원동)
망원유수지 풋살장		풋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볼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테니스장			3,000 ~ 6,00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55,000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체육관	~ 100,000	~ 160,000	
	다목적	15,000	30,000	
	체육실	~ 40,000	~ 6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100,000	2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개정 2018.12.27.>
	체육관	~ 200,000	~ 400,000	
	다목적	30,000	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소체육관(大)	~ 60,000	~ 120,000	
	다목적	15,000	30,000	
	소체육관(中)	~ 40,000	~ 60,000	
	다목적	10,000	20,000	
소체육관(小)	~ 3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 · 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망원동 테니스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기능	위치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 (염리동)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 (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볼링장	볼링	
망원동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2(망원동)	망원동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2(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 (창전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 (창전동)
망원동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 (망원동)	망원동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 (망원동)
망원유수지 풋살장		풋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망원유수지 풋살장		풋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 개인사물함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개임당 2,500 ~ 4,500	※ 볼링화 대여 : 1,000원
		청소년	1개임당 2,000 ~ 4,000	
		어린이	1개임당 2,000 ~ 4,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테니스장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 개인사물함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개임당 2,500 ~ 4,500	※ 볼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어린이	1개임당 2,000 ~ 4,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테니스장		3,000 ~ 6,00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 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 민 체육센 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 면당 <개정 2018.12.27.>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 · 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망원동 테니스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 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 민 체육센 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 면당 <개정 2018.12.27.>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 · 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망원동 테니스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 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당구장 운영비가 연간 68백만원 미만이고, 한시적인 경비인 설치비가 125백만원 비용이 발생됨

4. 작성자 : 생활체육과 체육시설팀 안순호 (☎ 3153-9875)